

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제 목 **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**

1.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제19635호(2019.11.26.)와 관련입니다.

2. “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운전업무 시작전에 받아야할 교육내용에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시 대응방법을 추가하는 내용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령이 공포 되었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시행일 : 2020년 5월 26일)

= 아 래 =

제25조(운수종사자의 교육 등)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1.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
2.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
3. 교통안전수칙
4. 응급처치의 방법
 - 4의2.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(신설조항)
5.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
6.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

붙 임 : 전자관보 사본 1부.

※ 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[끝]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

담 당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실 장 박호동 전무이사 박태환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19 - 302호 (2019.11.28) 접수 ()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 / <http://www.tourbus.or.kr>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